

평창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호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나. 안전의무 이행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다. 안전감시망 구축 및 예산지원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1. 19. ~ 2015. 12. 0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감사실-12933, 2015.11.25.)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감사실-13093, 2015.11.30.)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주민생활지원과-71472, 2015.12.10.)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2]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놀이터 내 각종 시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
3. 시설물의 설치 및 정기검사일,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갱신 예정일 표기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7.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8. 법정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날씨, 놀이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항목(법정서식에 의거한 안전 점검표) 및 방법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별표2]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⑤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8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의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분	점검항목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그 네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 판의 파손
	○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분	점검항목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 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의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분	점검항목
미끄럼틀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영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 - 2265